【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

음성군 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음성군 관광·체육시설 임시휴관 종료 및「강화된 1.5단계」운영 안내

1. 귀 기관(협회 및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직영 관광·체육시설에 대하여 임시휴관을 종료하고「강화된 1.5단계」운영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3. 아울러 각 읍·면·협회 및 단체에서는 관광·체육시설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시설 「강화된 1.5단계」운영계획

개방시설	당초내용	변경내용	운영방법	비고
관광·체육시설 28개소 (시설 현황은 붙임 1참조)	2020. 11. 16.(월) ~ 상황종료 시까지	2020. 12. 1.(화)부터 개방 ※ 총청북도민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지침 준수 <주요내용>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 실내체육시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관광 및 실외 시설 50%인원 제한 • 관광·체육시설 이용자 지속적 체온 체크 및 이용자대장 작성 • 손 소독 및 마스크착용 의무화 준수 • 장시간 이용 자제 및 적정 사용 인원 유지	

붙임 1. 음성군 관광체육시설 현황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관광체육시설) 1부.
3. 시설 이용자 대장 및 소독 대장 1부. 끝.

시설관리사업

수신자 03노로도(의회 포함), 07전국시군구, 음성군체육회장, 음성군생활체육골프협회장, 음성군게이트볼협회장

주무관 정효정 운영팀장 양신우 시설관리사업 2020. 11. 30.
소장 이재규

협조자 주무관 심윤주

시행 시설관리사업소-11220 (2020. 11. 30.) 접수

우 2770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47 / http://www.eumseong.go.kr

전화번호 043-871-2482 팩스번호 043-871-1954 / feelhyo@korea.kr / 비공개(5)

■ 음성군 관광·체육시설 현황

구분	계	관광시설	체육관	종합운동장 및 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기타 체육시설
5개분야	28개소	1	3	7	13	4

연번	시설 유형	시설 명	비고
합계	5개 분야	28개소	
1	관광시설	감우재전승기념관	
2	체육관	음성실내체육관	
3		삼성실내체육관	
4		대소국민체육센터	
5	종합운동장 및 체육공원	음성종합운동장	
6		금왕생활체육공원	
7		대소생활체육공원	
8		삼성생활체육공원	
9		감곡생활체육공원	
10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11		맹동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12	그라운드골프장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음성 그라운드골프장	
13		원남 그라운드골프장	
14		감곡 그라운드골프장	
15		음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16		덕생 전천후게이트볼장	
17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18		소이 전천후게이트볼장	
19		원남 전천후게이트볼장	
20		맹동 전천후게이트볼장	
21		대소 전천후게이트볼장	
22		삼성 전천후게이트볼장	
23		생극 전천후게이트볼장	
24		감곡 전천후게이트볼장	
25	기타 체육시설	음성 전천후 돔구장	
26		음성 궁도장	
27		음성 테니스장	
28		생극파크골프장	

2020-11-30 1:36 PM From: Eumseong County To: 798731138 Page.004/009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비교표

□ 정부방향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격상, 지자체별 추가 격상 가능

□ 우리도 방안

○ 정부(안) 대로 우리도는 1.5단계로 조정하되, 추가 격상 가능함에 따라 취약감염시설 일부 강화 조치

※ 단, 시군 여건에 따라 단계 조정 가능하나, 하향 조정 불가

○ 단, 제천시(기서행), 청주시는 2단계 원칙하에 일부 조정 가능

□ 중앙, 도, 시군의 행정명령이 상충될 경우 시군 행정명령 적용

음 성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비교표

구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안(12.1.~12.14)	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11.30까지)	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안(12.1.~12.14)
1 모임·행사	■ 방역 수칙 준수하며 모임·행사 허용 - 단, 참여 인원이 500명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모임) 동창·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방역 수칙 준수하며 모임·행사 허용 - 단, 참여 인원이 500명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의무화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타시도에서 개최되는 집회·시위 및 교육 등 행사 참여 자제 권고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redacted]	(정부안보다 강화) *2단계 적용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50인 미만 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방역 추가사항 -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동호회, 종교행사, 공연, 여행 등 ※ 불가피한 방문 시 개인차량 이동,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2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 관중 입장(30%)	(정부안과 동일) ■ 관중 입장(30%)
3 국공립 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도서관, 평화기념관, 문화예술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술체험촌, 유아숲, 산림휴양시설, 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관광시설, 체육시설(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은 ①'20. 11. 16 ~ 11. 30. 15일간 시설운영 중지(2.5단계 적용) ②'20. 12. 1. ~ 12. 8. 8일간 이용인원 제한 운영(1.5단계 적용)	(정부안과 동일)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2020-11-30 1:36 PM From: Eumseong County To: 7987311138 Page.005/009

2020-11-30 1:36 PM From: Eumseong County To: 798731138 Page.006/009

<table>
<tr><th>구분</th><th>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안(12.1~12.14)</th><th>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11.30까지)</th><th>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안(12.1~12.14)</th></tr>
<tr><td>4
다중
이용시설
㉮
중점관리
시설
(9종)</td>
<td>■ 9종 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 및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table>
<tr><th>구 분</th><th>방역조치 내용</th></tr>
<tr><td>유흥시설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td><td>-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td></tr>
<tr><td>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td><td>-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금지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td></tr>
<tr><td>노래연습장</td><td>-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 즉시 소독, 30분후 사용</td></tr>
<tr><td>실내스탠딩 공연장</td><td>- 음식 섭취 금지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td></tr>
<tr><td>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td><td>-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뷔페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및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td></tr>
</table>
</td>
<td>■ 9종 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 및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table>
<tr><th>구 분</th><th>방역조치 내용</th></tr>
<tr><td>유흥시설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td><td>-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td></tr>
<tr><td>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td><td>-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금지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td></tr>
<tr><td>노래연습장</td><td>-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 즉시 소독 30분후 사용</td></tr>
<tr><td>실내스탠딩 공연장</td><td>- 음식 섭취 금지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td></tr>
<tr><td>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td><td>-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 이상)
* 뷔페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및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td></tr>
</table>
※ 식당·카페의 1.5단계 기준은 50㎡이지만,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1단계 기준 150㎡ 적용</td>
<td>(정부안보다 강화)
■ 9종 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 및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table>
<tr><th>구 분</th><th>방역조치 내용</th></tr>
<tr><td>유흥시설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td><td>- 02시 ~ 05시까지 운영중단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td></tr>
<tr><td>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td><td>-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금지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td></tr>
<tr><td>노래연습장</td><td>- 02시 ~ 05시까지 운영중단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 즉시 소독, 30분후 사용</td></tr>
<tr><td>실내스탠딩 공연장</td><td>- 음식 섭취 금지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td></tr>
<tr><td>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td><td>-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뷔페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및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td></tr>
</table>
※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영업제한시간 추가</td></tr>
</table>

2020-11-30 1:36 PM From: Eumseong County To: 7987311138 Page.007/009

구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안(12.1~12.14)	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11.30까지)	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안(12.1~12.14)
5 다중이용시설 ㉮ 일반관리시설 (14종)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14종 시설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정부안보다 강화)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아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작성 의무화 ※공고문: 음성군공고 제2020-1752호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아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	- 2면 이상 집합·음식물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부터 익일 09시 까지 청소년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아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PC방은 제한 강화
※ pc방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작성 의무화
*공고문: 음성군공고 제2020-1752호

시설 소독 대장

시설명:

※ 소독은 매일 3회 이상 실시 할 것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장소와 표면

※ 소독 대장은 각 체육시설에서 자체 보관할 것

일련번호	소독일시	소독약품명	소독자 성명	비고

시설 이용자 명부

시설명:

※ 체육시설 단체[동호회] 이용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함.
※ 명단은 각 체육시설에서 자체 보관할 것

날짜	방문 시각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주지	전화번호	비고
12. 1.	17:24	√	음성읍	010-1234-5678	예시